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94호 2019. 7. 1.(월)

조 례

-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목포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4
-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6
-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
-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3
-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 36
-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0
-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44
-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 46
-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50
-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52
-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 58
-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 ----- 61
-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1
- 목포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 61

규 칙

-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73

고 시

- 하천점용허가 고시 ----- 89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89

회람							
----	--	--	--	--	--	--	--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74호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사무보조자**”를 “**사무보조자 및 자문위원 활용 등**”으로 변경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의회 사무직원 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은 감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하되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광주시 방법원 목포지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을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감사 또는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① 의원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목포시의회사무국장에게 자료 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의원에게 즉시 전달한다. 이 경우 관련기관 총괄부서에서 일괄수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
- ⑤ 제1항에 따른 자료는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 또는 USB 저장장치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도 포함된다.
- ⑥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영 제38조를 따라야 하며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⑦ 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9조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조(사무보조자 및 자문위원 활용 등) ① ----- ----- ----- -----.
② <신 설>	②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의회 사무직원외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은 감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하되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④ (생 략) 1. ~ 3. (생 략)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신 설>	4.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u>제10조의2 <신설></u>	<u>제10조의2(고발의 절차) ①의회는 법 제41조제5항(및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을 고발할 수 있다.</u> <u>②제1항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한다.</u>
<u>제21조(준용규정)</u>	<u>제22조(현행 제21조와 같음)</u>
<u>제21조 <신설></u>	<u>제21조(감사 또는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u> <u>①의원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목포시의회사무국장에게 자료 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u> <u>②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u> <u>③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의원에게 즉시 전달한다. 이 경우 관련기관 총괄부서에서 일괄수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④제2항에 따라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 ⑤제1항에 따른 자료는 서면외에도 전자문서 또는 USB 저장장치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도 포함된다. ⑥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영 제38조를 따라야 하며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⑦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9조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목 포 시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제기	① 성 명		③ 생년월일	
	②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⑤ 과태료금액	
	⑥ 부과기준		⑦ 이의제기일자	

첨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 귀하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75호

목포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 2.“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 3.“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배정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입생의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 학생 및 저소득주민의 자녀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액) ①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받은 동장은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 대상 및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에 교복구입비 등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련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0
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 학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학교명					
주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학생과의 관계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지원금액	원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 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접수 기관 확인 사항	확 인 내 용			확 인 자	
	① 학생 및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 확인 ()			직	성명 (인)
	②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확인 ()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76호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 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목포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제4조(지원방법) ①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3.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③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제외한 전라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장례 지원을 받은 경우도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제3조 각 호의 자에 한하여 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4조제2항제3호의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업무대행) ①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점검) ①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제8조(환수) ①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6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장례일자	
사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	년	월	일	사망원인	
장례수행자	성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락처	
	장례일자			장례방법		
지급계좌	금 기 관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77호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목포시 옥암동 1021”를 “목포시 통일대로119번길 25”로 한다.

제22조제4항 “수탁자는 시장이 지원하는 운영경비와 시설을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를 “수탁자는 시장이 지원하는 운영경비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금 등을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된 청소년문화센터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2. 목포시 하당청소년문화센터 : <u>목포시 옥암동 1021</u>	제2조(명칭 및 위치) 2. 목포시 하당청소년문화센터 : <u>목포시 통일대로119번길 25</u>
제22조 (수탁자의 의무) <u>④ 수탁자는 시장이 지원하는 운영경비와 시설을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u>	제22조 (수탁자의 의무) <u>④ 수탁자는 시장이 지원하는 운영경비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금 등을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u>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78호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2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

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제4항) 제1호 및 제2호, 제3호,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 ----- ----- ----- ----- ----- ----- -----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신 설>

2. <신 설>

② 장애인에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에 대체취득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 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 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 삭 제 >

③ 제1항 및 제2항-----

-----.

1. < 삭 제 >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
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
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
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
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
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
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
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2. < 삭 제 >

3. < 삭 제 >

4. < 삭 제 >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79호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계리”를 “회계 처리”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협력사업비등 처리방법) ① 협력사업비 처리방법은 금고약정서에 명시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원하도록 하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원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연평균 협력사업비(복수금고의 경우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목포시 금고지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방회계법」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방회계법」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이 높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산업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8) 4 4 (19) 6 6 5 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추가배점 불가	20 (7) (6) (4) (3)	
3. 지역주민이용편의성		21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ATM 설치 대수 ※ 금고 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 업무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세정정보센터운영 능력 및 계획	(6) (8) (8) (3)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7 (5)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② (생 략) ③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 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 이 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 입·세출과 구분하여 <u>계리</u>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 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회계 처리----- ----- -----.
④ ~⑥ (생 략) 제4조(평가기준) ① ~② (생 략) ③ <u>시장은 금고지정관련 협력사업</u> <u>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할</u> <u>수 있다.</u> 1. <u>협력사업비(출연금) 처리방법은</u> <u>금고약정서에 명시하여 집행의 투</u> <u>명성을 제고한다.</u> 2. <u>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금</u> <u>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u> <u>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시장</u> <u>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u> <u>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u> <u>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u> <u>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u>	④ ~⑥ (현행과 같음) 제4조(평가기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3. 제2호에 따라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
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
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협력
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
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
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 절차)

① ~ ④ (생 략)

< 신 설 >

< 신 설 >

제11조(지정 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협력사업비등 처리방법) ①

협력사업비 처리방법은 금고약정
서에 명시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시장
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
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
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
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협력

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연평균 협력사업비(복수금고의 경우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생 략)

제16조(현행 제15조와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1] 목포시 금고지정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제4조 관련)			[별표 1] 목포시 금고지정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제4조 관련)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100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2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방회계법」 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 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10) 6 4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방회계법」 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 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8) 4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방회계법」 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 대손충당금적립률 (건전성)	(22) 7 7 6 2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방회계법」 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19) 6 6 5 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	
가. 정기에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마. 삭제	(6) (5) (4) (3) 삭제		가. 정기에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삭제>	(7) (6) (4) (3) <삭제>	
3. 지역주민이용편의성	20		3. 지역주민이용편의성	21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 기업 및 가계자금 대출실적	(5) (6) (7) (2)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삭제>	(8) (6) (7) <삭제>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1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 업무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능력 라. 세정정보센터운영 능력 및 계획	(5) (7) (7) (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 업무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능력 라. 세정정보센터운영 능력 및 계획	(6) (8) (8) (3)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9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5) (4)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5) (2)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80호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의 정신지체 장애인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의 관리책임 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 하여야 하고, 다른 개인이나 단체 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 급 2급 이상인 자와 정신지체 장 애인은 사전에 승인을 얻어 주민 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 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관리책임 등) ----- ----- ----- ----- -----.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 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의 정신지체 장애인은----- ----- -----.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81호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

「목포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명당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70만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신생아 1인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액)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명당 <u>장애1~2급은 100만원, 장애3~4급은 70만원, 장애5~6급은 50만원을 지원하여야 한다.</u>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신생아 1인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액) ① ----- ----- ----- <u>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u> <u>은 10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u> <u>않은 장애인은 70만원을 지원하여</u> <u>야 한다.</u> ----- ----- ----- -.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82호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내역의 수리 의뢰자 인적사항 중 “장애종류, 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장 애 명		장 애 정 도			
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유형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연번: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 (제7조제2항 관련)

장 애 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주 소			전 화 번 호		
	장애명			장 애 정 도		

수 급 유 형

☐ 수급자☐ 차상위☐ 일반

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

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비고

「목포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목포시장

확인자 :

동 주민센터

담당

(서명 또는 인)

(○ ○ 수리업체장) 귀하

장 애 인 보 장 구 수 리 내 역

기간 : ~

[illegible]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83호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5조제2항”을 “제25조”로, “제74조제4항”을 “제74조제5항”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법 제11조”를 “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2조”를 “법 제11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16조”를 “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4조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영 제22조제2항”을 “영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74조제4항에 따라 설치되는 목포시부동산가격공 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1조 (목적) ----- ----- ----- 제25조 - ----- ----- 제74조제5항----- ----- ----- ----- ----- -----.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제4조 (심의사항) ----- -----.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 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1. 법 제10조----- -----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 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 별 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 ----- -----
<신 설>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 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 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영 제22조제2항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6. 영 제23조제2항----- -----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84호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광상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이하 "관광상품"이라 한다)이란 목포시 명의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
2. "상표권"이란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이란 관광상품 중 브랜드 관광상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상품의 개발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관광상품 개발 및 산업 육성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다각적 관광상품 개발 지원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원 및 효율적인 운용 방안 마련
3.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선정 및 육성방안
4. 상설매장, 박람회 등 판로개척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사항
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 참여 확대

6. 그 밖에 관광상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상품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목포시의회 의원, 관광상품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회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과 목포시의회 의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 신청) ① 상표를 사용하여 관광상품을 제작·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대상은 대표자의 주소 또는 사업장이 관내에 있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

한다.

제10조(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지정)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업(轉業)·폐업 등으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 할 경우
2. 법에 위반되거나 상표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3.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상표를 사용 하는 경우
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정이 취소되면 이미 제작·유통된 상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 참여 부서 및 우수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 시상) ① 시장은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구매실적이 높거나 아이디어 제안 등에 활발히 참여한 부서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매출총액 또는 관광상품별 매출 실적에 따라 우수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3조(시정요구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 브랜드 관광 상품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상표 활용 디자인 개발
2. 상품의 품질 향상
3. 특허출원, 등록 및 관리
4. 그 밖에 우수관광상품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2조의 우수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업체의 시설 근대화 및 집단지 사업

2.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3. 생산기술, 경영, 법률 등의 교육과 자문
4. 상설매장 판매를 위한 서비스 마케팅 인력수급
5. 그 밖에 우수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판로개척)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과 제12조에서 선정한 우수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
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 참가
4. 각종 전시 판매장 또는 상설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5. 판매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조사
6. 그 밖에 판로개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업무 위탁) 시장은 관광상품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상품 상설매장 설치, 운영
2. 관광상품 평가 또는 우수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 선정
3. 관광상품 개발, 판매, 유통 등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관광상품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상설매장 운영) ① 제15조에 따라 상설매장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수탁 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기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관광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사용토록 할 경우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제15조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85호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의 “100분의5”를 “100분의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할인 및 수수료) ① 시장은 화폐의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화폐 권면의 100분의5 (설 추석 전후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 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할인 및 수수료) ① ----- ----- 100분의6 ----- ----- ----- -----.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86호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4(물류보조금 지원)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해당사업장에서 생산된 완제품 등을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시 지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이주직원정착금 지원) ① 시장은 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시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직원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정착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도권 소재기업이 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시로 이전한 수도권 소재기업의 근로자가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고용을 유지하고 있을 것

3. 시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정착금 외에 전입지원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현금 이외의 지원은 제외한다) 받지 아니할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의4(물류보조금 지원)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해당사업장에서 생산된 완제품 등을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시지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5(이주직원정착금 지원) ① 시장은 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시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직원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정착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도권 소재기업이 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시로 이전한 수도권 소재기업의 근로자가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고용을 유지하고 있을 것 3. 시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정착금 외에 전입지원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현금 이외의 지원은 제외한다) 받지 아니할 것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87호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과 구성원들의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목포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업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전라남도가 지정한“예비사회기업”

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 또는 전

라남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구조 및 관리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 공공구매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와 시,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 활동가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활동가
3. 윤리적 소비자 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4.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1명
5. 시 공무원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인 위원은 그 재임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발의하였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교육 훈련·홍보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상호 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 특화 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 시설 지원 등 지속 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사회경제적 조직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활성화 지원) 시장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 또

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발굴·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및 정책연구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 간 및 민간네트워크의 협력 지원
4.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협력지원, 지역 및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5.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회계, 마케팅, 판로개척, 경영등 지원
6. 사회적경제 조직 및 시민교육·홍보 지원
7.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8. 그 밖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③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재정 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기업은 제1항의 지원금을 해당 사업 목적

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시장은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역 사회와 연대, 지역 사회 공헌 활동, 공동 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우선 구매 촉진)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 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18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목포시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목포시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 기업 지원 확대

제19조(홍보)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주민 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4.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련 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목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및 「목포

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목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및 「목포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1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88호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휴게 공간 및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 정자”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휴게 공간 제공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야외 정자(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 채납한 야외 정자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운동기구”란 시장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공원녹지 담당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영조물배상”이란 목포시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시장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관리주체) ①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단,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대표자가 된다.

제5조(예산) 시장은 시민들에게 휴게 공간을 제공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 정자를 및 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공공장소(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
2.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문화재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문 게시 등)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하며, 야외 정자의 경우 명칭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현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점검·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지관리 현황을 연1회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10조(대장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정자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표]

안내 표시문 (제8조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위 치	
명 칭	
관리부서	
연 락 처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89호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주요시책 및 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목포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목포시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역할 및 기능) ①공정하고 투명한 시민 공론화 과정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위원회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론화의 주관
2. 공론화 과정의 설계 및 실행계획 수립
3. 공론화 관련 조사·연구 활동
4. 시민의견 수렴 활동
5. 제13조에 따른 권고안의 작성 및 제출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시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 관련 공론화에 관한 사항
2.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
3. 시민청원, 목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제안 등의 방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쟁점 사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론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
4. 중립적이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인사
5. 지역 한안에 밝은 주민대표 등

④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해당 공론화 의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친·인척 및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조사·연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민참여단 구성) 위원회는 제1조에서 규정한 위원회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여론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요청 등에 따라 위원회의 공론화 의제 및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등 지원) ①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시장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최종결정사항의 권고 등) ①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결정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하고, 시장은 권고안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3290호

목포시 도로굴착·복구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사전 심의·조정하여 빈번한 도로 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 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① 목포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건설국장이 된다.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6호까지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초(1, 4, 7, 10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가 제3조 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6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심의회 심의·조정을 거쳐 그 점용기간·점용장소·점용공사·교통소통 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 지하 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 첫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장 사유와 처리 기한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도로굴착 사업계획 제출)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미리 해당 시장에게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10월 중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방지대책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시설유지대책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점용위치·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 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 지하 매설물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요청받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일자·설치위치·규격·매설깊이 그 밖에 특이한 사항 등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굴착 사업계획 검토) ① 제7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첨부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여부 확인
 2.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의 포장된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내의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
 3. 그 외 우기 및 동절기 굴착여부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3. 상하수도관·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 공사를 할 경우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5. 농어촌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 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6. 송유, 수돗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 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전기통신·상하수도·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제9조(허가의 신청) ① 굴착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 굴착·복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설계도면과 주요 지하 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첨부된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관리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굴착공사의 시행) ① 굴착공사시행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공사를 시행하는 지점 또는 그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구조의 보호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굴착 공사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의 완료)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에 관하여 확인을 받으려면 확인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① 굴착사업시행자가 제11조에 의거 제출하는 준공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면도(축척 : 1천200분의 1이상). 다만, 제1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첨부된 평면도와 같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종단면도(축척 : 종방향 1천200분의 1 이상, 횡방향 100분의 1 이상)
3. 횡단면도(축척 : 100분의 1 이상)
4. 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등의 설치위치도(축척 : 1천200분의 1 이상)
- 4의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하시설물도(이하 “지하시설물도”라 한다)
5. 기타 주요부위에 대한 상세도(축척 : 10분의 1 이상 30분의 1 이하)
6. 1000분의 1 수치지도상에 지하매설물 속성 값 입력 자료와 측량 사진 자료 [별표1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는 준공도면을 영구 보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표지를 제조하여 해당준공도면에 의하여 책자로 제본된 축소도면 5부[A3(297mm×420mm) 크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구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은 도로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2. 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등을 적을 것

④ 시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GIS지하시설물의 최신성, 현실성 유지를 위하여 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행하여진 결정, 처분 및 그 절차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목포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는 폐지한다.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1775호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물류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투자완료일 기준)이고 상시고용인원(‘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 준용)이 5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1조의4 규정에 의한 물류보조금은 육상운송비용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연간 5천만원까지 최초 보조받은 날부터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물류보조금은 당해 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하며, 물류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1년단위로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이주직원정착금 지원) ① 조례 제21조의5 규정에 의한 이주직원정착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 100만원
2. 근로자와 동반이주한 가족 세대원 : 1인당 100만원(500만원 한도 내)
- ② 이주직원정착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0호 서식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이주직원정착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물류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소재지			전화 F A X	
투자유형		☐ 이전 ☐ 신설 ☐ 관내 기존기업 신·증설			
사업장소재지				업종	
		(산업단지명:)		산업분류번호	
사업장규모 (㎡)		부지면적	건축면적		사업개시일
물류운송 내역		자가운송		영업운송	
신청액		천원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구비서류	1.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업단지 입주(분양) 계약체결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2.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 3.. 물류비(운송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 등 확인원 1부 - 재무제표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기타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유증빙서 등 - 운송약관 또는 영업약관 계약서, 배차일지 등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차량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0호서식]

이주직원정착금 총괄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전화	
			F A X	
공장소재지		(산업단지명 :)		
공장설립일			업종 (분류번호)	()
상시 고용인원 (명)	총 인원(A=B+C)		신규 채용인원(B)	기존공장 이전인원(C)

지원금 신청 내역

전입인원총수(A=B+C) / 세대수	전입 근로자수 (B)	동반 가족수 (C)
명/ 세대	명	명

신청 금액

지원금 유형	이주직원정착금	신청금액 총액	만원
--------	---------	---------	----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목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이주직원정착금 신청내역 1부.
2. 이주직원정착금 개인별 신청서 1부.

<붙임 1>[별지 제20호서식 관련]

이주직원정착금 신청내역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핸드폰)	입사일	주민등록 전입일	가족수 (명)	신청금액 (만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계								

위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일 현재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2〉[별지 제20호서식 관련]

이주직원정착금 개인별 신청서(근로자→회사제출용)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택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회사명		근무부서	
직장전화번호				

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

신청인원(본인포함) /세대수	동반가족수	전입일자	비고
명 /세대	명		

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

지원금유형	이주직원정착금	신청금액	만원
-------	---------	------	----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3
에 따라 이주직원정착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표이사 귀하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물류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투자완료일 기준)이고 상시고용인원(‘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이 5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1조의4 규정에 의한 물류보조금은 육상운송비용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연간 5천만원까지 최초 보조받은 날부터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물류보조금은 당해 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하며, 물류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1년단위로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3(이주직원정착금 지원) ① 조례 제21조의5 규정에 의한 이주직원정착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 100만원 2. 근로자와 동반이주한 가족 세대원 : 1인당 100만원(500만원 한도 내) ② 이주직원정착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0호 서식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주직원정착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목포시 고시 제2019-128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 점용 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일

목 포 시 장

○ 하천 점용 허가 고시 사항

1. 허가번호 : 제2019 - 1호
2. 점 용 자
 - 성 명 : (사)전남녹*자전거문화센터(김*호)
 - 주 소 : 목포시 용당로
3. 점용목적 :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행위
4.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5. 점용위치 : 목포시 옥암동 1132번지
6. 점용면적 : 무동력선 25대, 동력선 1대
7. 점용기간 : 2019. 6. 17 ~ 2020. 5. 18.

목포시 고시 제2019-130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일

목 포 시 장

○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순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불 임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6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1	목포시 산정로 29	2019.07.01	산정동이 중심이 되는도로임
2	목포시 고하대로646번길 18-1	2019.07.01	고하대로 기초번호 활용
3	목포시 영산로257번길 8	2019.07.01	영산로 기초번호 활용
4	목포시 죽교천로122번길 2	2019.07.01	죽교천로 기초번호 활용